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기수 / 고려대 법대 교수

(주)대우자판의 거래거절행위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평석

· 1997. 5.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 사건번호 9609 조일 1339

사실개요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건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자판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 피심인은 승용차 및 버스품목에 관하여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는 사업자이다. 국내승용차시장은 총7개 생산업체 중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등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88.0%에 달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구조로서, 승용차 생산업체들의 국내총공급액은 1995년도 기준으로 93,553억원에 이른다.

대우자동차의 판매유통구조를 보면 피심인의 계열회사로서 국민차를 제외한 차량을 생산하는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및 국민차량을 생산하는 대우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생산된 차량을 공급받아 피심인이 차량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하부 판매조직은 지점과 지점에 소속된 직영영업소 및 일반대리점이 있다.

피심인은 강중환과 1992. 4. 20.자로 승용차 등의 '자동차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공급을 개시한 이래 1995. 12. 31. 계약기간종료시까지 거래하여 왔다. 따라서 이는 대우자동차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반복적 거래관계로서 피심인과 신고인간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심인은 자기의 쌍문지점 산하의 일반대리점인 신고인에 대하여 1995. 12. 16. 11:00~

1995. 12. 28. 09:54 기간동안 판매전산시스템을 통제하여 이미 계약된 차량의 출고증발급, 전산조회 및 할부금수납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우월적지위남용행위성립 건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투하자본의 회수곤란, 새로운 거래처의 탐색 및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거래처이전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승용차 및 버스품목에서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반면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을 전속적으로 공급받아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이어서 통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자기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자기가 정한 '대리점거래 담보확보 기준'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고서도 이와는 별도로 대리점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백지어음과 보충권부여증교부를 사실상 강요하여 대부분의 거래대리점으로부터 이들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정한 담보물의 확보·제공은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피심인이 정해놓은 담보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지 훗날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백지어음 등을 요구하여 일률적으로 교부받았다.

심결요지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건

피심인이 자기의 취급차량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온 신고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상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차량판매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전산장해를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차량공급을 중단하였는 바, 이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량공급을 중단한 행위로서 특히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질서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규정, 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1995. 7. 8.)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우월적지위남용행위성립 건

어음법상 보충권자에 의하여 보충된 백지어음은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고, 추후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에 유리하게 처리할지라도 대리점측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등 불이익이 초래된다. 반면,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피심인의 우월한 거래상지위와 더불어 백지어음을 피심인에게 교부한 상황하에서는 거래기간 중 대리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담보·보증보험가입 등 대손위험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백지어음 등을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사업자에게 거래관계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법령의 적용 및 주문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심인은 자기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자기의 자동차상품을 대리점사업자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심인의 대리점거래 담보확보기준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고서도 추가로 백지어음의 교부를 요구하여 받음으로써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의 대리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백지어음을 물적담보, 보증보험가입 등 기설담보만으로는 대손위험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자기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문안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해설 및 평석

1. 머리말

이 심결례에서는 해당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운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하는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1996년말에 관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간단히 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 심결례에서 문제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거래거절과 우월적지위 남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에 본 심결례에 대한 판단을 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이하에서 사업자가 직접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거절행위나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배제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¹⁾ 이 때 ‘공정한 거래’란 순수하고 능률적인 경쟁상태를 보장하는 거래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일반에 의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문제삼게 되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정거래를 ‘저해’한다 라고 함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함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위험성(개연성)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²⁾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이를 직접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한 경쟁질서란 ① 사업자나 소비자가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와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②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수단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③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예: 제조업자)가 그 힘을 바탕으로 거래상대방(예: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거래를 시작하고, ②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③ 사업자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진다. 또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경쟁상의 차이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결국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통하여 이같은 동등한 경쟁의 조건이 되는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3. 1996년 12월 개정내용

1) 독일에서의 공정거래,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하여는 Fritz Rittner, Wettbewerbsund Kartellrecht, 5. Aufl., Heidelberg, 1995, S. 275 ff. 참조.

2) 「공정거래편람」, 경제기획원, 1989, 198~200쪽.

공정거래법에서는 종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여섯가지를 규정하였었다. 즉, 거래거절행위와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자배제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거래강제행위,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에 한 가지를 더하여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³⁾

종전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주로 그 규제대상으로 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개정법률에서 추가하게 된 배경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여 계열분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열분리 후에 내부거래를 통해 상호간에 자금이나 자산·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 계열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경제전체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한 내부거래로서 규제받게 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관련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왔던 것을,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경쟁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확대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는 모든 거래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가 있고, 이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였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입법형식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두 가지가 있다. 미국과 독일법은 법에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해석에 의하여 규제하는 형식이고, 우리와 일본법은 추상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함으로써 금지하는 형식이 있다. 전자는 거래계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법적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고시를 통하여 열거한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거래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착하여 규

3)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에 관해서 개정법률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

2) 우리법의 태도 : 열거 및 고시방식

법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일곱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유형 또한 추상적이므로 제2항에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하게 하고 있었다(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은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일반지정)와 특수한 사업분야에만 지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특수지정)로 구분된다. 특수지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지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조치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특정분야, 특정행위로서 보다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1996년 개정법에 의하여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여 왔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되게 되었다.⁵⁾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지정과 특수지정의 관계⁶⁾

일반지정 유형	특수지정 유형
- 거래거절	-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지정
- 차별적 취급	-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 경쟁사업자배제	-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 부당한 고객유인	- 경품투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 거래강제	-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지정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低價)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지정
- 구속조건부거래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 사업활동방해	
- 부당한 표시·광고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5.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거절과 우월적지위 남용

1) 거래거절

4) 황적인·권오승, 경제법(5정판), 법문사, 1996, 176~177쪽.

5) 이에 대하여는 이남기, 경제법(신정판), 학연사, 1997, 350쪽 참조.

6) 특히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에 대하여는, 손경환,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AIPPI저널 1997년 2월호(한국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4, 14쪽 아래 참조.

(1) 개념

거래거절이라 함은 ①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②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③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⁷⁾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데 이르지 않는지만, 상품의 수량을 제한 또는 축소하는 정도가 심하여 실질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유형

①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위의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의 거래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수평적 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사업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다른 공급선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소지가 커지며,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측에서 보면 상호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강한 행위유형이다. 따라서 당연위법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공정경쟁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기타의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거절을 하는 행위가 단독의 거래거절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업자가 거래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공동의 거래거절에 비하여 경쟁저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유로 소위 조리위법행위로 규정한다. 이 경우 그 거래거절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여 위법행위를 판단한다.

(3) 사례 : 한국화장품의 거래거절행위 건: 93. 6. 30. 의결 제93-92호

한국화장품은 자사와 거래하기 전부터 경쟁사제품을 취급하고 있던 제주 중앙대리점에게 ① 자기의 제품만을 취급할 것, ② 자사제품의 가격을 인하여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리점이 이에 불응하자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화장품의 행위가 ①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의 자유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경쟁사의 거래기회를 감소시켜 동종제품간의 경쟁을 감

7)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세창출판사, 1997, 121쪽.

소시키는 행위이며, ② 자신의 책임아래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대리점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판정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신문공표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2) 우월적 지위 남용

(1) 의의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⁸⁾ 따라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자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여야 하고, ② 행위의 억압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의 거래상 지위의 우월성은 독과점사업자가 갖는 시장지배적 지위까지는 불필요하고 거래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또 행위의 억압성이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거래의 개시, 거래조건, 거래의 이행 의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우월적지위 남용행위가 경쟁저해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근거는 거래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침해 또는 억압” 한다는 데에 있다.

(2) 유형

우월적지위 남용의 유형으로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을 들 수 있다.

① 구입강제

자신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품재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등이다. 가령 동양맥주(OB맥주)가 소주업체인 (주) 경월을 인수하고 난 후 자신의 기존 맥주도매상에게 도매상의 주문없이 경월 그린소주를 공급하고, 일부 도매상이 이에 반발하자 OB맥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한 행위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이익제공강요

이익제공강요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병원들이 제약회사들에게 약품납품의 대가로 기부

8) 정주환, 한국경제법, 진정판, 세창출판사, 1997, 134쪽.

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③ 판매목표강제

판매목표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강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백화점이 입점업체로 하여금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액이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급하게 하거나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라든지 담배인삼공사가 제일제당(주)에게 홍삼원을 위탁판매하도록 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시 위약금을 물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④ 불이익제공

불이익제공이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거래조건은 고가판매, 불리한 결제조건, 반품조건, 애프터서비스조건 등을 말한다. 가령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언제든지 추가로 물품대금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한전이 공사를 발주하는 계약을 시공업체와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물가가 5% 이상 상승하면 공사비를 인상해주시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인정치 않고 공사대금을 인상해주지 않은 행위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⑤ 경영간섭

경영간섭이란 자신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의 임면(任免)에 간섭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⁹⁾ 가령 제조업체가 자신의 대리점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점의 위치를 옮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자에 대하여 취급하는 품목을 사전승인받도록 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6. 본 사안의 검토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¹⁰⁾ 거래거절 그 자체는 경쟁정책적 관

9)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세창출판사, 1997, 138쪽 참조.

10) 황적인·권오승, 경제법(5정판), 1996, 177쪽.

점에서 보면 가치중립적이지만 구체적인 거래거절이 경쟁제한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거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등 경쟁정책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으로 된다.¹¹⁾ 특히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역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거절에 해당한다.¹²⁾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심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인 상대방에게 약 12일 동안 판매전산시스템을 통제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차량의 출고증발급, 전산조회 및 할부금 수납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현대사회는 전산정보처리에 의하여 업무처리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전산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통제함으로써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것도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인 대리점에게 고의·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산장해를 유발한 것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긍정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특히 기술발달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범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우월적지위는 시장지배적지위와 같이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¹³⁾ 또 우월적지위남용 가운데 불이익제공이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거래조건은 고가판매, 불리한 결제조건, 반품조건, 애프터서비스조건 등을 말한다. 가령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언제든지 추가로 물품대금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한 담보제공요구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피심인은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는 사업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원래 피심인이 담보규정에 정하여놓은 것과는 별도로 백지어음과 보증권부여증을 사실상 강요하여 받아두고 있는 것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지나친 담보요구이고 이는 피심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특히 백지어음은 보증권의 행사에 의하여 완전한 어음이 되는 것이고 이 어음을 통하여 유리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¹⁴⁾ 과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담보, 보증보험가입 등으로 대리점거래 담보확보기준에 의한 그밖의 담보조치가 취하여진 점을 고려할 때, 필요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요구에 해당한다. ■

11) 정주환, 한국경제법, 진정판, 세창출판사, 1997, 121쪽.

12) 황적인·권오승, 경제법(5정판), 1996, 178쪽.

13) 황적인·권오승, 경제법(5정판), 1996, 181쪽.

14) 이기수, 어음법·수표법학, 1995년 개정법 신판, 박영사, 1996, 125, 131쪽 참조.